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06

서 울 고 등 법 원

제 9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누5779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9. 8. 29. 선고 2018구합86900 판결
변 론 종 결	2020. 4. 23.
판 결 선 고	2020. 5.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40,801,360원, 지방교육세 8,045,790원, 가산세 28,458,7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06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당사자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9면 제11행의 "49세대"를 "48세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